

#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 서남대학교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s of Record Management in Closed Private University: Focused on "Seonam University"

김민경 (Min-kyung Kim)\*\*, 소정의 (Jeong-eui So)\*\*\*  
김유경 (You-Kyung Kim)\*\*\*\*, 오효정 (Hyo-Jung Oh)\*\*\*\*\*

### 초록

최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되는 사립대학이 늘어남에 따라, 폐교 후 대학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 기록관리에 대한 법령 및 지침이 모호하여 기록의 이관과 관리업무 시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학기록과 폐지기관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통계서비스를 활용해 폐교 사립대학의 현황표를 작성하고,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사례연구 대상으로는 조사된 폐교 사립대학 중 가장 최근에 폐교되었고, 규모가 큰 서남대학교를 선정하여 면담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록 유실 방지를 위해 폐교 시 사립대학 기록관리 전문요원 배치 의무화이다. 둘째, 폐교 사립대학 지침 모호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해야 한다. 셋째,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가 소극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상위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향후 사립대학의 폐교가 진행되었을 때,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ABSTRACT

With the recent increase in private universities being closed due to a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the importance of records management at schools is also increasing. However, the guidelines for records management at closed private universities are ambiguous, causing confusion in the transfer of records and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survey on university records and institutions, and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private universities in schools through education statistics services. Among the surveyed private universities, the latest to be closed, and the largest of them was Suh Nam University, which looked at the detailed records management status of private schools. The purpose of the interview was to analyze the results of the interview and draw up implications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First, the proposed improvement plan in this study is to make it mandatory to deploy records management specialists at private universities for specialized records management. Second, the law should be revised to improve the ambiguity of private universities' guidelines. Third, continuous support from higher institutions should be ensured so that records management at closed private universities is not passive. This improvement will enable records management at closed private universities to be carried out efficiently when the future closure of private universities is carried out.

키워드: 대학, 고등교육기관, 기록관리, 대학기록물, 폐교기록  
University,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Record Management, University Records, Abolition Hall,  
Closed University Records

- 
- \* 이 논문은 2018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8913575).
-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mimk1004@naver.com) (제1저자)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so94815@gmail.com)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a2k123@wu.ac.kr)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문화융복합이카이빙연구소 연구원(ohj@jbn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8년 11월 19일 논문심사일자 : 2018년 12월 19일 게재확정일자 : 2018년 12월 19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4): 203-225, 2018.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8.29.4.203]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대학기록은 대학 내 발생한 업무에 대한 책임을 증명하는 자료이며, 이를 통해 대학 행정업무의 증거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교육부는 각 대학의 기록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기록문화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2018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를 배포했다(교육부 2018).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도 국·공립대학을 위한 표준으로 구성되어 대학 정체성에 관련된 역사기록물 또는 구성원 관련 사료기록 업무를 다룬다는 특수성이 포함된 사립대학의 체계에 맞지 않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국·공립대학과 달리 사립대의 경우 기존 문서규정, 보관보존규정에 머무르는 수준이다(교수신문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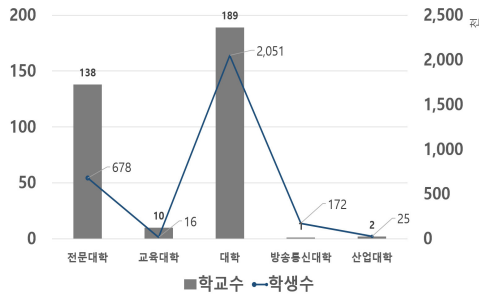
특히 최근 대입 학생 수 급감에 따라 많은 수의 대학들, 특히 사립대학교를 중심으로 폐교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한 기록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사립대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 4항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에 해당하여 다른 행정기관 및 국·공립대학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 속한다. 따라서 사립대학 역시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공기록물법에 의거하여 기록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 사례로서 ‘아시아 대학은 폐교가 되자 검찰의 추가 수

사를 우려한 재단 관계자가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폐기하였으며, 관련 인원 상당수가 잠적하였고, 학교 내에 설치되었던 컴퓨터는 대부분 도난당해 학업을 입증할 기록이 없어지기도 했다(국민일보 2009).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폐교된 대학기록을 관리하는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기록의 특성에 맞는 기준이 적용된 관리지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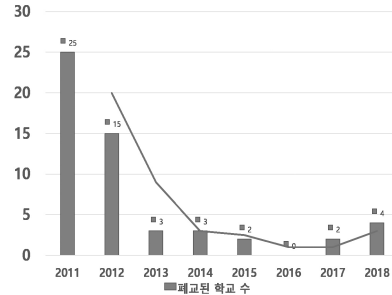
〈그림 1〉은 대학통계 현황에 따른 대학 수와 학생 수를 나타낸 그림이다. 교육통계서비스<sup>1)</sup>에서 제공하는 대학통계 현황(〈그림 1.a〉 참조)을 살펴보면 총 학교 수는 340개이고 총 대학생 수는 3,437,309명이다(2018년 4월 1일 기준). 그 중 폐교된 대학은 총 폐교 대학은 60개이다(〈그림 1.b〉 참조).

〈그림 1.b〉는 연도별 폐교 대학 수를 도식화한 것으로, 교육통계서비스가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통계 학교별 주요 현황 중 연도별 폐교 대학 수를 2011년 4월 1일부터 2018년 4월 1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차트이다. 2011년에 폐교 대학 수치가 가장 높은 이유는 2011년 이전에 폐교된 대학의 수를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는 폐교 대학 수가 점차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통계자료에 중복된 학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이를 제외하면 8년간 평균 폐교 대학은 5개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폐교된 학교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매년 일정한 수치로 진행되고 있지만, 폐교 대학기록에 대한 관리는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 교육통계서비스. [cited 2018.10.26]. <<https://kess.kedi.re.kr/index>>.



〈그림 1.a〉 대학별 학교 수 및 학생 수



〈그림 1.b〉 연도별 폐교 대학 수

한편 국·공립대학의 경우, 폐교가 진행되더라도 인근 국·공립대학으로 통폐합되기 때문에 기록관리의 주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관되는 형태를 띤다. 반면 사립대학의 경우, 폐교가 진행되면서 재단이나 법인이 사라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폐교 대학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는 명분이나 책임의식, 법령 등이 부재하기 때문에 기록관리의 주체가 불분명해진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입학 인원 감소와 재정난의 심화로 인해 2021년까지 약 38개의 사립대학교의 폐교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에 따른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한국스포츠경제 2018). 대학은 폐교될 경우 폐지기관에 속하게 되며 폐지기관 기록물관리 및 이관지침에 따라 상위기관으로 기록이 이관 및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대학은 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기록관이 설치된 대학조차도 기록관 운영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배성중 외 2015). 특히 사립대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대학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관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보존공간의 부족 등의 문제에 의해 폐교되었을 때 기록물 이관이 분산되어 진행되는 등 소홀하게 관리

되고 있다. 이는 공공기록물법에서 사립대학의 기록관 설치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록관 설치에 대한 인식 또한 저조함(이주현 2018)에서 기인한다. 또한 법에 의한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 기록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 사립대학은 기록물을 각 부서별로 자체보관하고, 기록물 현황 파악조차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박수라 2005).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된 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특히 통폐합을 통해 기록관리 주체가 바뀐 경우는 기록관리의 주체가 모호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완전히 폐교된 사립대학의 기록관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실제 기록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남대학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다. 해당 대학은 본 연구의 진행 중 폐교 절차가 시작된 학교이며, 가장 최근에 폐교된 학교이기도 하다. 또한 의과대학, 분교, 대학원 등 폐교 대학 중 가장 큰 규모를 가진 학교로써 학생과 직원의 수 또한 많았기 때문에 연구에 있어 적합한 사례라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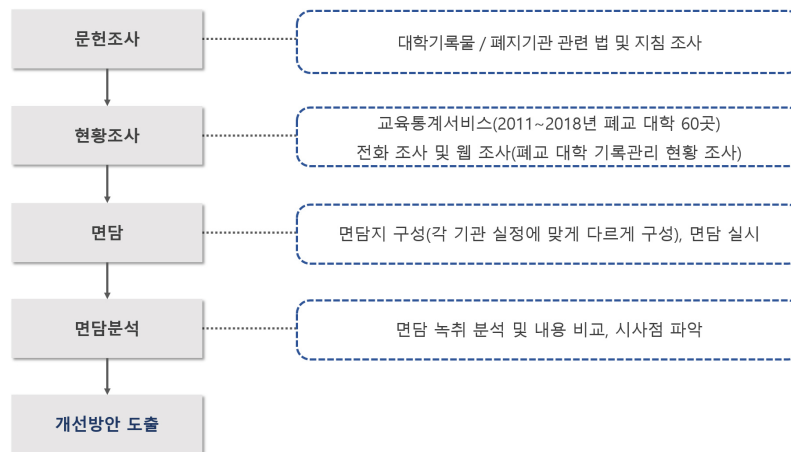
## 1.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관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현황조사,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먼저 폐교 대학기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기록과 폐지기관의 정의 및 법적 근거 등을 문헌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대학이 폐교된 후의 기록현황과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통계서비스를 활용해 폐교 대학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폐교 대학은 총 60곳으로, 이 중 학교명이 바뀌거나 전문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경우인 27곳을 제외하고 33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조사 대상으로 한하여 전화 및 웹 조사를 통하여 폐교 대학 기록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공립대학은 폐교가 아닌 통합 형태로 진행되며, 폐교 대학기록 또한 통합된 학교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통합·흡수된 경우와 아예 폐교된 경우로 나뉘며, 폐교 시 기록관리 주체인 재단 법인이 해산되고, 폐교 사립대학 관리기관인 A 기관<sup>2)</sup>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폐교된 사립대학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학생 수가 많았던 서남대학교를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관련기관의 세부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서남대학교 관계자,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 기관인 A 기관, 사립대학의 상위기관인 교육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 질문은 정보공개 청구 답변 및 관련 기관들과의 사전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작성하였으며 2018년 7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전화 및 대면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 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림 2> 연구방법

2) 해당 기관의 무기명 요청으로 인해 기관명을 밝히지 않았다.

### 1.3 선행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대학기록에 관한 선행연구와 폐지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대학기록의 정의에 유형과 관련된 연구로, 박호숙(2003)은 기록물관리의 기초 이론에 입각하여 현용 기록물과 준현용 기록물의 실태를 조사하고, 당시의 자료관시스템과 전문관리기관시스템으로 운영될 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공공 기록물 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 및 대학의 다양한 기록물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박수라(2005)는 대학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대학기록물의 범위와 대학 아카이브즈의 역할 수행을 위한 업무를 살펴보고, 실태분석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학은 기록물관리의 제도, 기구를 제대로 마련함으로써 대학운영과 관련하여 기록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사립대학에서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학 아카이브즈의 제도와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장윤희(2005)에서는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대학기록관의 역사기록물의 수집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학기록관은 대부분 설립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기록관리 업무를 체계화시키고 기록관의 효용성 증대를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록관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기반으로 기록관리가 이루어져야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수집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 제안하였다. 조용훈, 서은경(2014)에서는 대학의 생산 및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비행정기록의 수집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비행정기록의 레포지토리를 구축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학사일정, 학생의 활동, 교수의 연구를 증명하는 디지털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폐지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민보혜(2010)는 기존의 학교 기록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폐교기록의 이관 및 관리 현황, 실제 활용도 및 기록의 분산 보존 현황과약을 통해 폐교기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용 및 관리 인력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민보혜(2010)는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폐교기록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의 차이가 있다. 김송이(2016)는 폐지기관 기록관리 제도를 기관별 관리 현황과 관련 법령·지침을 통해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관리의 주축이 되어야 할 유관기관들의 상호협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통보식의 업무 진행 방식은 제도와 실무현장의 괴리를 넓히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가기록원과 폐지기관을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들은 소통을 통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위 선행연구는 대학기록 자체보다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현황에 관한 연구로, 대학이 폐교될 경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폐교 시설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에 비해

폐교 대학기록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폐교 대학기록은 대학의 활동과 기능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내재적 가치, 행정적 가치, 법적 가치, 사료적 가치를 지니며, 이러한 가치는 대학기록이 수집되고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필요성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다(정미봉 2006). 그러므로 폐교 대학기록을 잠재된 활용 가치가 높은 기록으로 인식하여, 하나의 사라지는 기록이 아닌 내재적 가치, 행정적 가치, 법적 가치, 사료적 가치를 지닌 기록으로 관리·보존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교된 사립 대학 기록에 초점을 맞춰 이를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대학기록물의 정의와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폐지기관의 기록관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정리하였다.

### 2.1 대학기록물

‘대학기록물’은 사립대학을 포함하여 공공기록물법 제3조 및 제10조에 의한 기록물 관리대상으로, 대학기록이란 대학의 연구 교육 봉사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형태의 기

록 자료로 대학의 운영에 관련된 행정기록물과 대학 존재의 근거가 되는 교사기록물도 포함된다. 여기서 정의된 ‘기록물’이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와 행정박물을 말한다(정태진 2012).

또한 국가기록원 대학기록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매년 기록물 생산량이 1천 권 상 혹은 5천 권이상의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국가기록원 2018). 그러나 이러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록관 설치가 강제 의무사항인 국·공립대학을 제외하면 실제 기록관을 설치 운영하는 사립대학은 거의 없는 열악한 실정이며 더구나 폐교된 대학일 경우 그 기록의 보존은 더욱 어렵다.

Samuels에 의하면 대학에서 발생하는 활동의 전체적인 범위를 학위수여, 지식전수, 사회화 촉진, 연구수행, 기관 유지, 사회봉사, 문화진흥, 크게 7가지 기능으로 나누고 대학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유형의 기록을 대학기록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정태진 2012). Samuels가 제시한 대학의 기능별 기록물에 대한 정리는 <표 1>과 같다.

대학기록물은 대학 기능 수행 시 기록의 특성에 따라 행정기록물과 비행정기록물인 역사기록물로 나눌 수 있는데 행정기록물은 일반적인 대학운영과 관련된 공식적인 업무과정에서

<표 1> 대학의 기능별 기록물에 대한 정리(Samuels 2007)

기능	활동	주요기록물 예시
학위수여	학생 모집	입학원서와 입학면접관의 심사평가서
	재정 보조	재정 보조관련 정책 결정 과정과 시행
	상담	상담일지
	졸업	졸업생 명단, 석·박사 학위논문

기능	활동	주요기록물 예시
지식전수	교과과정	교과과정 수립 위원회의 회의록, 총장, 학과장 등의 서신
	수업	강의 노트와 강의자료, 강의 녹화기록물
	학습	강의 노트와 과제
	평가	평가기준의 절차와 결과가 포함된 기록물
사회화 촉진	규정	대학규정과 규칙
	시설과 복지	주거·편의시설 규정과 행정업무기록물, 홍보·안내 출간물
연구 수행	교과 외 활동	학생 자치기구, 동아리, 학회, 봉사과 관련된 기록물
	연구 운영	연구수행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규정
기관존속	연구 진행	연구노트, 연구과정 일지, 과정보고서, 의견을 주고받은 편지
	운영	대학·법인설립허가서, 법인회의록, 총장, 부총장, 학장, 학과장 등의 경영진에 대한 기록물
	채무	기부금, 등록금, 지원금 등의 수입원과 관련된 기록물, 내부 감사보고서, 공식적인 외부 감사 보고서
	인사	교직원조합, 교수단체협의회, 교직원과 교수진의 채용, 평가, 승진, 재직 등과 관련한 기록물
사회봉사	시설	캠퍼스 설계계획, 건축, 사용, 관리, 개보수, 철거에 관한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 캠퍼스 설계 계획서, 설계도면, 건축 진행보고서
	사회봉사	활동의 목적, 정책, 제공된 업무, 활동성과 등 사회봉사활동의 전반적인 과정의 기록물
문화진흥	문화진흥	경영관리 기록물, 보유물의 상세한 정보가 담긴 기록물, 수집물활용에 대한 정책과 절차 등의 수집물 수집, 보관, 이용에 관한 정보가 담긴 기록물

〈표 2〉 대학 기능 수행 시 생산 기록물의 범위(Samuels 2007)

기록물의 유형 및 범위	행정기록물	역사기록물
기록물의 유형 및 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요 위원회의 회의록 및 보고서 및 평가서</li> <li>2. 학장회의 회의록</li> <li>3. 대학운영과 관련된 공적 문서</li> <li>4. 행정 업무상 생성된 문서</li> <li>5. 기구, 직제, 인사에 관련된 문서</li> <li>6. 대학의 규정 및 법령</li> <li>7. 예·결산 현황</li> <li>8. 해외 교류대학과 관련된 자료</li> <li>9. 학칙, 학제, 교과목에 관한 자료</li> <li>10. 업무 수행 상 참고 관련 자료</li> <li>11. 대학의 전 기관에서 생산한 간행물</li> <li>12. 공식 행사 및 기념식 행사 자료</li> <li>13.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 학생이 대학의 각 기관에 제출한 보고서 등</li> <li>14. 교수관련기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와 학술활동에 관한 자료</li> <li>- 교수의 저작물에 관련된 자료</li> </ul> </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 및 대학활동 관련 기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역사와 관련된 자료</li> <li>- 대학설립자 또는 총장과 관련된 자료</li> <li>- 대학구성원의 각종 행사와 관련된 자료</li> <li>- 대학과 관련된 이미지, 상징물에 관한 자료</li> <li>- 퇴임교수의 자료</li> <li>- 교수협의회의 자료</li> </ul> </li> <li>2. 학생 관련 기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운동과 관련된 자료</li> <li>- 학생활동 및 축제 및 체육대회 등에 관련된 자료</li> </ul> </li> <li>3. 기타기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문회 기록물</li> <li>- 노동조합 관련 기록물</li> <li>- 교직원 친목활동 자료</li> <li>- 대학과 관련된 외부 보도물(신문, 뉴스 등)</li> </ul> </li> </ol>

생산된 결과물인 반면 역사기록물은 대학의 자치조직의 활동기록, 대학구성원(교수, 직원, 학생)의 대학생활에 따른 기록, 기타 대학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자료로서 개인이 작성한 문서류, 간행물, 사진, 박물관류, 도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양상미 2008). <표 2>는 앞서 언급한 대학 기능 수행 시 생산되는 대학기록물의 범위를 정리하였다.

## 2.2 폐지기관 기록관리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법령에 근거한 폐지기관의 정의 및 폐지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자 한다.

폐지기관 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르면 ‘폐지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기타 법령 등에 의거, 설치된 기관으로서 설치 근거법령 등에 의거 폐지된 기관을 말한다.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의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폐지기관은 법령에 따라 승계 또는 매각 등의 과정을 거쳐 청산되며, 이 과정에서 기록 소유 주체의 변동 또한 발생하게 된다. 법령에서는 기록 소유 주체의 경우를 첫째, 공공기관의 업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둘째,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민관기관으로 전환되는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민보혜 2010).

본 연구는 폐지기관 중 폐교 사립대학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하였다. ‘폐교’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학교로써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의미

한다. 폐교재산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나,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폐교 후 기록물의 경우도 폐지기관 기록물관리 법에 의하여 기록물의 철저한 이관 및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기록물법에 의하면 “제25조 ①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때는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물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폐지기관의 기록물 담당을 위한 인력 배치에 있어서는 “제25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지되는 기관의 소관 기록물의 체계적인 이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지침은 크게 기록물의 생산부터 보존, 기록물 이관, 기록물 폐기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기록물의 생산과 보존까지의 과정으로는 기록물은 법 제12조와 시행령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생산·등록·분류·편철·정리·보존기간 책정되어야 함을 지침으로 명시하고 그에 따른 세부지침이 존재한다. 기록물 이관에 관해서는 생산·접수된 모든 기록물을 대상으로 승계기관이 있는 경우 2년 이하 존속되는 경우 전량 승계기관으로 이관해야 하며, 2년 이상 존속되는 경우에는 기산일로부터 2년 경과 후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승계기관이 없는 경우는 2년 이하 존속 경우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하지만, 2년 이상 존속되는 경우에는 기산일로부터 2년경과 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기록 폐기에 대해서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폐기 심의회를 거쳐 관할 기록물기관의 장이 행해야 하고 폐기를 하더라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 폐기해야 하며, 폐기할 시에는 무단 폐기로 간주하여 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천적으로 폐지기관 자체적으로 기록물을 폐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국가기록원 2005). 본 연구에서는 폐교된 사립대학 기록들이 상기한 공공 기록물법과 기록물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조사 및 면담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3. 현황조사

#### 3.1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 현황

본 장에서는 폐교 대학기록관리 현황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통해 폐교 대학기록과 관련된 기관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기록관리 현황을 알아보고, 사전면담을 진행하였다. 먼저 정보공개는 대학기록물 및 교육기록물 관리 기관인 교육청과 교육부,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폐교 대학기록의 현황, 폐교 대학기록의 이관, 기록관리 주체 등에 관한 내용을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교육청은 초, 중, 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있어 권한이 없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의 경우 교육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국가기록원은 폐교 사립대학을 폐지기관으로 판단하여 상위기관인 교육부에서 모든 기록관리를 담당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조사를 위해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조사된 폐교 대학 60곳의 기록관리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중 학교명이 바뀌거나 전문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경우인 27곳을 제외하고 33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각 기관별 기록관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전면담을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은 폐교 대학 33곳의 기록관리 주체와 기록관리 현황에 대해 정리한 표이다. 기록관리 현황은 기록관리 담당부서, 기록의 폐기 현황, 기록정보서비스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통폐합된 대학의 경우, 기록관리 담당부서는 대부분 총무인사팀, 행정팀 등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폐기는 중앙에서 지침을 통해 폐기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기록정보서비스는 거의 하지 않았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증명서 발급만 수행하고 있었다. 그 중 제주교육대학교, 삼척대학교, 상주대학교와 같은 국립대학교는 인근 대학의 국·공립 대학의 지역 캠퍼스로 통합되어 기록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공기록물법에 의해 국·공립 대학은 기록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보존 기간이 10년 이상이 기록물은 특별히 지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중요기록을 이관하지 않고 대학의 기록관이나 혹은 기록관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영구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재단이나 법인이 해산된 경우, 기록관리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교육부가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 업무를 위임한 A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 폐교 대학 기록관리 현황

구분	폐교 대학	기록관리 주체	기록관리 현황		
			기록관리 담당부서	폐기 현황	기록정보서비스
1	가천길대학	가천대학교	총무인사팀	- 행정서류 보존연안 지나면 폐기 - 준영구, 영구 기록만 보존된 상태 - 중앙의 정부문서관리규정에 따라 폐기	X
2	경원전문대학				
3	가천의과학대학교				
4	건동대학교	A 기관	A 기관	X	증명서 발급
5	경북외국어대학				
6	광주예술대학교				
7	대구미래대학교				
8	대구외국어대학교	동명대학교	동명대학교로 이관하여 관리됨.		
9	동명대학				
10	동명정보대학교	경동대 설악 제 2캠퍼스	경동대 설악 제 2캠퍼스로 이관하여 관리됨.		
11	동우대학				
12	명신대학교	A 기관	A 기관	X	증명서 발급
13	벽성대학				
14	삼척대학교*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본교: 춘천)의 삼척캠퍼스로 통합	폐기할 기록물 목록을 송부 받아서 폐기 시 감독	증명서 발급
15	상주대학교*	경북대 상주캠퍼스	경북대 상주캠퍼스로 이관하여 관리됨.		
16	서남대학교	A 기관	A 기관	X	증명서 발급
17	서울보건대학	을지대 성남캠퍼스	을지대 성남캠퍼스로 이관하여 관리됨.		
18	선교정대학교	A 기관	A 기관	X	증명서 발급
19	성심외국어대학	영산대학교	영산대학교로 이관하여 관리됨.		
20	신흥대학교	신한대학교	신한대학교로 이관하여 관리됨.		
21	아시아대학교	A 기관	A 기관	X (폐교 대학기록이 이관되기 전 무단 폐기)	증명서 발급
22	원주대학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로 이관하여 관리됨.		
23	적십자간호대학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로 이관하여 관리됨.		
24	제주교육대학교*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로 이관하여 관리됨.		
25	탐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총무팀	X	증명서 발급
26	제주산업정보대학				
27	청주과학대학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팀	X	증명서 발급
28	한국철도대학	한국교통대학교 의왕캠퍼스			
29	충주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30	한국 폴리텍 V 대학 고창캠퍼스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로 이관하여 관리됨.		
31	한민학교	A 기관	A 기관	X	증명서 발급
32	한북대학교	신한대 동두천캠퍼스	신한대 동두천캠퍼스로 이관하여 관리됨.		
33	한중대학교	A 기관	A 기관	X	증명서 발급

\* 국·공립대학교로 통·폐합됨

한편, 국가기록원 대학기록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매해 생산량의 1천 권이상, 5천 권이상인 사립대학교는 기록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교는 기록관의 설치 규정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사립대학교에는 기록관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표 4>는 2016년 기준 대학 기록관리 실태조사 결과로, 본 연구를 위해 재구성한 표이다(이주현 2018).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사립대학교의 수가 국·공립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전문요원 배치율(95%)과 비교해 사립대학 전문요원의 배치율(8%)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립대학교에 배치된 전문요원들은 비정규적인 형태로 고용되고,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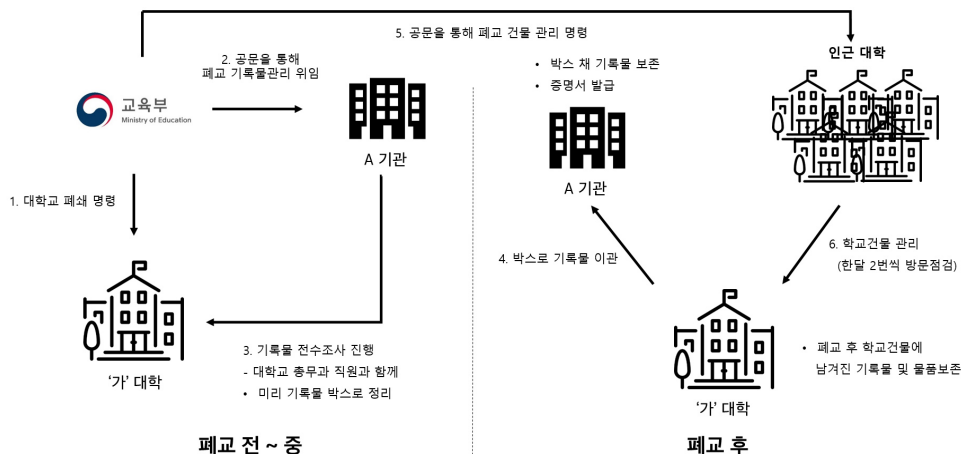
적 특성에 의한 관심과 지원의 편차가 심하다(이주현 2018). 또한 사립대학에서는 기록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기록관리 시스템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식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교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3.2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 프로세스

본 절에서는 폐교 사립대학의 구체적인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인 서남대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그림 3>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폐교 전, 중, 후로 나누어 정리한 그림이다.

<표 4> 2016년 대학 기록관리 현황조사 결과(이주현 2018 재구성)

구분	합계	국립	공립	사립
기관 수	341	44	8	289
기록관 설치대상	164(48%)	44(100%)	8(100%)	112(39%)
기록관 설치기관	48(14%)	31(14%)	0(0%)	17(6%)
전문요원 배치	65(19%)	42(95%)	1(13%)	22(8%)



<그림 3>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 프로세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폐교 전~중인 상태 즉, 폐교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에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교의 폐쇄 명령서를 발부하고, 기록관리를 위해 A 기관에 폐교 기록관리 위임을 위탁한다. 이후 A 기관은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대학교 총무과 직원과 함께 기록을 이관한다. 이때 학적부, 행정기록을 포함한 모든 기록이 이관된다. 이관기록은 해산법인의 청산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본 연구 대상인 서남대학교의 경우 폐교와 학교법인의 해산이 같이 이루어져 A 기관에서 학교와 관련된 기록을 전부 이관 받게 된다. 폐교 절차가 완료되면,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42조에 의거하여 인근 대학에 공문을 발송하여 폐교 건물 관리를 명령하고, 한 달에 두 번 방문점검을 진행하여 해산법인의 청산인이 선임될 때까지 학교 건물을 관리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재 법령은 폐지기관 기록물관리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대학이 폐교되었을 경우 공공기록물법 제25조에 의거하여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전부이며 이는 행정기관의 폐지에 따른 기록관리 업무나 지침을 따르며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침들은 대부분 대학교라는 특성과 대학교의 실무를 고려하지 못한 일반적인 지침에 불과하다. 교육부에서 발의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은 폐교 사립대학이 늘어남에 따라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를 위해 제시한 첫 번째 대책 마련이라 볼 수 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을 우선시하게 되지만 위 법령에는 기록관리를 위한 업무보다는 재단의 위탁재산, 재산관리 등에 내용을 제

시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또한 마찬가지로 학교재정 및 운영, 설립 등을 위한 청산절차에 대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 3.3 서남대학교 기록관리 현황

현재 폐교 이후 서남대학교는 사립학교법 제42조(민법 제 86조)에 의거하여 관련 부서 및 인근 국립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건물이 관리되고 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 해산법인의 청산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서남대학교의 경우, 해산법인의 청산인이 선임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산인이 선임될 때까지 대학시설에 대한 방법 및 파손 방지를 위한 방법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인근 대학의 지원을 받아 캠퍼스별 주 1회의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본 연구진이 현장조사를 위해 서남대학교를 방문한 당시에 이관되었어야 하는 기록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다. 대학 본관 내 기획처와 학적과의 캐비닛과 서랍장 등에 분과별 관련 자료를 포함한 많은 양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다. 또한 사무실 책상에도 간행물, CD, 회의자료 등 학교와 관련된 자료가 방치되어 있었다. 건물 내부의 경우, 시설물과 학생들의 물품이 방치된 상태였으며, 교수 연구실에는 전공 서적과 논문, 학생과 관련된 상담기록 등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실험실에는 위험한 약품과 실험도구가 보안장치 없이 방치되어 학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학생기록을 포함해 학교 내부에 얼마의 기록이 남아있는지도 파악되지 못한 채 기록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기록의 손실은 물론 더 나아

가 기록의 유출 문제도 제기된다.

성과 기능에 맞추어 각각 다르게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면담 질문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 4. 세부 면담조사

### 4.1 면담설계

세부적인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3장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면담을 수행하였다.

먼저 ‘폐교 전’ 과정에 관한 질문은 서남대 관계자와 관련된 질문으로 폐교 전 기록관리 방법과 기록관리 업무 시 문제점과 기타 의견으로 구성하였다. ‘폐교 중’ 과정에 관한 질문은 A 기관과 서남대 관계자에게 관련된 질문으로 폐교 진행 과정, 폐교 사립대학 기록의 이관 주체 및 기준, 기록 유형에 따른 이관방식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구성된다. 기록관리가 아닌 이관에 관한 질문을 위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폐교 후’ 과정에 관한 질문은 국가기록원, 교육부, A 기관을 대상으로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 주체, 기록 유형에 따른 기록관리 방식, 기록 보존 기준 및 지침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른 면담 질문은 각 기관의 특

### 4.2 면담 결과 분석

앞서 기술한 면담설계에 따라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대상자는 서남대학교 관계자 3명, A 기관 2명, 국가기록원, 교육부 각 1명으로 총 6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면담 대상자 선정 기준은 먼저 서남대학교 관계자의 경우 폐교 전 과정에 대해 가장 적절한 대상이라 판단하여 선정하였고, A 기관은 교육부의 위임을 받아 현재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은 우리나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며, 교육부의 경우 대학교의 상위기관이므로 선정하였다.

기관별 면담은 2018년 7월 9일부터 8월 17일 까지 4곳의 기록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2주마다 진행하였다. 서남대학교 관계자의 경우, 현재 서남대학교 관리를 맡은 관계자 2명과 학교 설립 당시부터 있던 서남대학교 관계자 1명을 선정하여 모두 대면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나

<표 5> 면담설계

폐교 과정	폐교 전	폐교 중	폐교 후
면담대상	서남대 관계자	서남대 관계자 A 기관	국가기록원 교육부 A 기관
면담 질문	1. 기록관리 방법 2. 기록관리 업무 시 문제점 3. 기타 의견	1. 폐교 진행 과정 2. 기록이관 주체 및 기준 3. 기록 유형에 따른 이관방식 4. 기타 의견	1. 폐교 기록관리 주체 2. 기록 유형에 따른 기록관리 방식 3. 기록 보존 기준 및 지침 4. 기타 의견

\* 기관의 기능에 따라 면담 질문은 다르게 구성

머지 3곳은 사전에 e-mail로 면담지를 발송한 뒤 2번에 걸쳐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 4.2.1 폐교 대상 기관: 서남대학교

서남대학교 관계자 면담은 서남대 남원캠퍼스에서 대면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자는 현재도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로 발송되는 우편이나 관계문서를 전달받고 전 서남대학교와 관련된 민원문제도 담당하고 있었다. 서남대의 경우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로, 면담자가 폐교 전 서남대학교에서 총무팀장으로 일하면서 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서남대학교의 기록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관련 면담 질문은 폐교 전, 중으로 나누어 폐교 전 기록관리 방법, 기록관리 업무 시 문제점 등에 대한 질문과 폐교 진행 과정, 기록관리 주체에 등에 관한 질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립대학교의 폐교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이 남아있는 경우와 해산되는 경우이다. 그 중 서남대학교는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로 A 기관으로 기록을 이관하게 된다. 기록 중 DB 안의 학적, 인사, 졸업, 경력 등에 관한 자료는 필수로 이관해야 하지만 행정전자문서가 아닌 비전자문서는 학교에 남아있는 상태였다. 폐교 전 과정에서 서남대학교는 총무과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기록물의 분류, 수집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전문요원의 부재는 폐교 중 기록물의 훼손, 방치까지 이어질 수 있어 A 기관으로 이관 시에도 문제가 된다. 실제로 서남대학교 담당자는 학교 폐

교 후 기록이 전부 이관되었다고 하지만, 연구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을 당시에 학교 안에는 많은 양의 기록물이 남아있었다. 기록관리 주체에 관해서 담당자는 서남대학교는 학교법인인 해산되고 난 후 더 이상 기록관리에 대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남겨진 기록을 학교 재산 청산과 함께 넘길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면담을 통해 학교 내 기록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폐교 사립대학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음으로는 폐교 중 과정에서 행정전자문서 외의 기록 유형에 따른 기록이관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서남대학교에서 생산된 의무기록의 경우, 본교인 남원캠퍼스와 서남대학교 의과대학과 연계된 광주의 서남대 병원, 남강 병원 두 곳도 함께 폐쇄되었기 때문에 이때 의무기록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관리된다. 법령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10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10년의 보존 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지역 보건소로 이관하게 되어있다. 해당 병원에서 기록을 보관하는 동안에는 직원이 병원 내에 상주하여 보험사나 병원에 관련된 환자의 요청 시 기록을 내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밖에 서남대학교의 도서관 소장 자료의 경우, 그 양이 방대하여 A 기관에서 보관할 수 없어 DB는 가져가지 않고 폐기하였으며, 도서들은 서남대학교 건물 안에 방치된 상태이다. 서남대학교의 도서관은 의대도서관, 중앙도서관, 아산에 있는 법학도서관 총 3곳으로 이루어져 도서의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관리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 4.2.2 관리기관: A 기관

A 기관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특수법인으로, 폐교 사립대학 기록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A 기관 역시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로, 면담은 서남대학교를 포함하여 폐교된 12곳의 기록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2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A 기관은 교육부의 사립대학교 폐쇄 명령 발부 후 직접적으로 폐교에 관여하는 기관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폐교 중 이관 목록, 기록이관 기준, 이관방식 등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A 기관으로 이관된 기록은 전자문서와 비전자문서로 구분이 가능한데, 전자문서의 경우, 각 대학마다 전자문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DB체로 이관한다. 비전자문서의 경우, 행정기록만 이관하여 보존한다. 비행정기록인 간행물, 동문회 기록과 같은 해당 학교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는 현재 폐교된 대학 건물 내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이러한 학교 역사기록물을 이관하지 않은 채 폐교 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인식 부족 또는 관련 지침에 위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이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폐교 사립대학 기록이관 기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 재산처분과 학적부를 교육부의 명령에 따라 업무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A 기관은 폐교 사립대학에서 기록물을 이관하여 보존서고에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A 기관 내 폐기지침이 없어 기록의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관 방식 역시 A 기관은 폐교 과정 중에 학교를 방문해 기록물

이관 준비를 하였으나, 이관 받은 기록물은 정리하지 않고 해당 기관 보존서고에 쌓아 두고만 있어 정확한 기록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A 기관 담당자는 교육부의 업무 위임을 통해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증명서 발급서비스라는 단순한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A 기관의 담당자는 기록의 유형에 따라 관리지침이 없어 정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대학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의 경우, 폐교 사립대학 기록으로써 보고 관리해야 하는지 모호하여 현재는 간행물을 포함하여 모든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A 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기록관리 담당자의 기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상위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 4.2.3 상위기관: 교육부와 국가기록원

폐교 후 기록관리 현황을 파악하고자 상위기관인 교육부와 국가기록원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이 폐교되었을 경우, 상위기관으로서 기록을 이관 받아 관리해야 하는 기관으로, 사립대학정책과의 담당 직원(이하 '교육부'로 통칭)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폐교 사립대학의 상황을 파악하고, A 기관의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 위임 업무를 자세하게 조사하고자 면담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은 직접적으로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와 연관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록물 수집과에서 대학기록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이하 '국가기록원'으로 통칭)와 면

담을 진행하였다. 교육부의 경우 A 기관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위임한 이후 방문·현장점검 절차 유무와 이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두 기관의 면담을 비교한 표는 다음 <표 6>과 같다.

두 기관은 상위기관으로서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 주체에 관한 질문에서 교육부는 본인의 기관이 상위기관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폐교된 대학 지역 내 권역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있다면 해당 기관으로 인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가기록원 역시 승계기관을 기록관리 주체로 보고, 기관의 유무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을 주장하였다.

기록관리에 관한 문제점으로는 먼저 교육부의 경우, A 기관의 서비스를 기록관리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A 기관의 업무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절차의 부재로 인하여 점검과 관련된 논의 및 A 기관의 기록연구직의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기록원의 경우에는 사립대학교 폐교 후 승계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속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 두 상위기관의 면담비교를 통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책임을 떠넘기고 해당 기관의 기록관리 체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A 기관에 위임된 업무와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폐교 대학 조사 업무를 조사하기 위해 <표 7>과 같이 추가 질의 면담을 수행하였다.

교육부의 경우, A 기관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나 A 기관의 기록연구사가 배치되지 않은 채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없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이에 관련된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와 국가기록원대학기록물의 광범위한 범위와 다양한 성격으로 인해 기존의 대학기록물은 대학기록물 처리과, 도서관, 박물관 등에 분산되어 관리되어왔다(정미봉 2006). 따라서 두 상위기관은 논의를 통해 대학기록물이 분산되어 관리되거나 이관 시 분실되는 기록물이 생기지 않도록 대학기록물의 특성을 포함하는 법령을 개발해야 한다.

<표 6> 상위기관 면담 비교

	교육부	국가기록원
담당 업무	사립대학정책과, 기록관리 전문요원	기록물 수집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 주체	대학교의 권역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승계기관
폐교 사립대학 기록 존재 유무	무	무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 업무	교육부는 교육부위임위탁규정에 따라 'A 기관'으로 업무 위임	—
문제점	현재 '기록관리'보다는 '증명서 서비스'가 위주이다 보니 '기록관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폐교 후 업무가 승계하는 곳이 없는 사립대학의 경우 신속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기관의 기록물관리 위임을 전제로 확대</li> <li>• A 기관의 기록연구직 배치 필요(현재 진행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의 해당 부서와 협업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li> </ul>



〈표 7〉 추가 질의 면담

기관	추가 질의	면담 내용
교육부	위임된 A 기관 폐교 대학 기록관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교 대학의 재학생과 학교 기본재산의 처리 관련 서류, 학적부 이관 및 관리</li> <li>• 별도 기록 유형이나 특정 기록을 명시하지 않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록물만 관리하여 모든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지 못함. → 법령개정 검토 중</li> <li>• A 기관의 위임된 업무 점검 절차 부재 → 최근 폐교 대학이 늘어남에 따라 기록관리 점검에 대한 논의와 A 기관의 기록연구직 배치를 진행 중</li> </ul>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내 폐교 대학 조사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폐교 대학 조사 업무 수행</li> <li>• 조사 시기: 2018.3 ~</li> <li>•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교사례(폐교명령일, 대학명, 승계기관, 처리내용)</li> <li>- 기록 유형별 현황표 및 상세목록, 기록물 수량</li> <li>- 그 외 연락처 등 참고자료</li> </ul> </li> <li>• 조사 요청을 보냈으나 자료 부재로 인한 업무 중단</li> <li>• 승계기관이 없는 사립대학이 폐교된 경우 조취를 취할 필요성을 느낌</li> </ul>

다음으로 국가기록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폐교 대학 조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었다. 국가기록원은 법적으로 폐교 대학의 상위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역할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담당자가 스스로 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면담 결과, 국가기록원은 현 상황에 대해 문제성을 느끼고 국가기록원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표 7〉 추가 질의 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부는 법령개정을 검토하고 국가기록원 역시 폐교 대학조사업무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위기관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4.3 시사점

본 연구에서 진행한 면담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폐교 여부와 관련 없이 근본적으로 사립대학은 기록을 담당해야 하는 기록관리 전문

요원이 부재하여 기록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립대학은 공공기록물법 제3조 생산량에 의거하여 기록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따르고 있다. 국·공립 대학의 경우 기록관리는 대학의 기록관 혹은 기록관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에 의해 관리된다. 하지만 3.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립대학교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실제 배치율은 전체 사립대학의 8%에 불과하다. 특히 국·공립대에 전문요원이 86%가 배치된 것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는 사립대학의 기록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방대한 양의 기록 유실 사태가 뻔히 예측되는 폐교 진행을 위해서라도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통한 기록관리가 절실하다.

둘째, A 기관 내 기록관리 지침이 모호하다. 폐지기관은 공공기록물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58조 “공공기관의 폐지에 따라 승계기관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으로, 승계하는 기관이 없이 폐지될 경우 폐지된 기관의 기록은 소관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다.”라는 법령에 의거하여 이관절차가 결정된다. 3.2절에서 언급

한 '사학진흥재단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을 포함한 법 어디에도 사립대학 기록관리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립대학 기록관리와 관련된 법과 규정의 모호함은 2021년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9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 중 38개의 사립대학교 폐교가 진행될 현실에서 매우 주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면담 결과, A 기관 역시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부재로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 기관은 증명서발급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이 상주해 있을 뿐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부재로 인해 방대한 양의 폐교 사립대학 기록을 문서보관소에 쌓아두고만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내부지침에 따라 A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을 간행물을 포함한 모든 문서를 이관 받았지만 폐기할 수 없어 현재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교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1인 체제가 아닌 다수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충원이 필요하다.

셋째, 상위기관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이다. 4.2절에서 언급한 내용을 복기해 보면, 서남대학교는 폐교 후 A 기관 업무 담당자와 함께 기록 이관을 시행했다지만 학교 안에는 아직 많은 양의 기록물이 방치된 채 쌓여있었다. 또 A 기관은 교육부의 업무 위임을 통해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를 시행하는 유일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보다 증명서 발급서비스만 담당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기록원과 교육부는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A 기관의 효율적인 기록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 5. 개선방안

본 장에서는 앞서 정리한 서남대학교 관계자, A 기관, 상위기관의 담당자와의 면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 개선 방안을 다음 3가지 방향으로 도출하였다. 첫째 폐교 시 사립대학교의 기록관리 전문요원 배치 의무화로 인한 기록 유실 방지이다. 둘째,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의 지침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A 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상위기관의 지원 확대방안을 제안하였다.

### 5.1 폐교 과정 시 사립대학교 기록관리 전문요원 배치

본 연구에서는 폐교 기록관리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사립대학교 내 전문요원 배치 의무화를 제안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사립대학은 10%내외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다.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배치가 활발히 되기 위해서는 사립대학교의 기록관리 관심이 필요한데, 이러한 관심은 대학 평가시 기록관리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사립대학 내 기록관리를 위한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폐교가 진행되는 과정 내에서 만이라도 법적으로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는 규정을 의무화 하거나, A 기관과 같은 상위 기관의 기록관리 요원을 증원하여 이러한 특수

상황시 전담 요원을 파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폐교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전문요원이 보유 기록물의 목록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기록의 이관을 대비하고, 상위 기관으로 기록물 이관 후 기록물의 유출이나 분실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5.2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 지침의 모호성 해소

법적 기준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특성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일반적인 공공기관과 같이 동일함 시행령이 아닌 폐교 대학기록의 특수성을 반영되어야 한다. 또 폐지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학교를 독립된 기관으로 봐야 한다. 교육부와 국가기록원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립대학 기록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특히 대학의 특수성을 포함한 법령이 필요하다. 즉, 폐교 사립대학 기록을 이관 받은 뒤 어느 범위까지를 폐교 사립대학 기록으로 볼 것인지, 어떤 유형의 자료 수집하고 향후 관리·보존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법령 및 관련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침 개정의 주체는 교육부와 국가기록원이 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기록의 특성과 가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기관이므로, 지침 정립 시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 중 중요기록물을 선별하는 기준, 평가·폐기 업무를 정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A 기관으로의 원활한 기록이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의 경우 우리나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기록물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

고 있다. 따라서 두 상위기관은 대학기록물의 특성에 맞춰 보존 기간 책정, 분류체계 수립, 폐기지침 등 공문서와는 차별화된 지침이 개발되어야 한다.

## 5.3 상위기관 지원을 통한 A 기관 역할 확대

A 기관의 기록관리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상위기관과의 체계적·정기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상위기관으로서 교육부와 국가기록원의 지원을 들 수 있는데, 두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A 기관을 위한 기록물관리 환경 구축 기준 및 역할 증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A 기관으로 기록물 이관하기 전 폐교 사립대학 방문 단계부터 업무가 시행된다는 점에서 기록관리 업무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A 기관은 폐교 후 서남대학교 기록이관 시 남아있는 기록물 현황과 증명서 발급서비스만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록관리에 소극적인 태도임을 보여준다. 앞으로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를 A 기관에서 맡아 진행할 예정이고 이용자가 폐교 사립대학 기록과 관련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따라서 A 기관은 상위기관의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기록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부는 A 기관의 업무를 단순 ‘증명서 발급서비스’에서 감사증적 차원의 ‘기록관리’로 업무 전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A 기관에 업무를 위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주기적 점검을 통해 제대로 된 기록관리가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폐교 후 사립대학교의 기록

이 이관되어 보존되기 때문에 향후 기록물의 정리가 미흡하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는 A 기관 폐교 사립대학 기록이관 목록을 받아 국가기록원과의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수집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의 경우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 A 기관의 현장방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사립대학교가 폐교 후 제대로 된 기록이관이 실시되었는지 등의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 또 국가기록원은 A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서고, 기록관리 시스템 및 장비구비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을 대비하여 국가기록원은 이관준비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차후 이관과정에서 생기는 분실, 훼손, 유출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 기관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각 기관은 기록관리를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소통을 통해 각자 맡은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교육부와 국가기록원은 A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기록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추가 배치하고, 제대로 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6. 결 론

본 연구는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관리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대학기록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폐지기관과 폐교 대학

교의 차이점에 대한 이론적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 대학 60곳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조사와 정보공개 청구를 실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현황표를 작성, 분석하여 면담을 수행하였다. 특히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관리실태 파악을 위해 최근 폐교된 서남대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관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 현황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교 시 만이라도 사립대학 내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배치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폐교 과정 내에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통해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보유 기록물의 현황 파악 및 폐교 후 기록이관 단계까지를 연속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연속성 있는 관리를 통해 향후 이관을 대비할 수 있으며, A 기관으로 기록물 이관 후 기록물의 유출이나 분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둘째, 폐교 사립대학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이 모호한 실정이다. 따라서 폐교 사립대학 기록은 현실적인 범위에서 실현 가능한 법령의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법령은 대학 기록관리를 위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대학기록이라는 목적과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기록관리 지침을 반영한 내용으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지침 개정의 주체는 교육부와 국가기록원이 되어서 두 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폐교 폐교 대학 기록 지침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A 기관의 적극적인 기록관리 업무를 위해서 상위기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대학을 포함한 각 기관은 폐교 이전부터 이후까지 지속

적인 논의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원 및 각자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록원과 교육부는 A 기관의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서고, 시스템 장비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A 기관은 증명서 발급서비스에서 벗어나 기록관리 중심의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폐교될 사립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폐교 사립

대학기록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폐교 기록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리지침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대학교의 폐교 과정을 통해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 실태를 일반화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향후 다양한 유형의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관리를 다각도로 비교·분석한 후속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참 고 문 헌

- 『교수신문』. 2018. 대학기록물관리, “전체대학 아우르는 정책마련 시급.” 12월 3일.
- 국가기록원. 2005. 『폐지(한시)기관 기록물 관리 지침』. 대전: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18. 『대학기록물 관리 지침』. 대전: 국가기록원.
- 『국민일보』. 2009. “군대 갔다오니 대학이 사라졌다...” 아시아대 77억원에 2차 경매, 오갈데 없는 학생들 ‘올분의 5년.’ 11월 19일.
- 교육부. 2018. 『2018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 세종: 교육부.
- 김송이. 2016. 『폐지기관 기록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민보혜. 2010. 『폐교 기록물 관리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박효숙. 2003. 『대학 공공기록물의 관리 실태 및 발전 방안: 국립 공주대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박수라. 2005. 『사립대학의 기록물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대전 A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배성중, 김태영, 한혜원, 김용. 2015. 국립대학교 기록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4): 151-178.
- 양상미. 2008. 『대학기록관 기록물 수집정책의 수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주현. 2018. 『사립대학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직무분석: 직무중요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장윤희. 2005. 대학기록물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1):

23-46.

정미봉. 2006. 『대학기록물 관리실태와 보존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태진. 2012. 『거점국립대학 기록관의 기록물 수집·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조용훈, 서은경. 2014. 대학기록관에서 비행정기록 수집방안에 관한 연구. 『제21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43-47

『한국스포츠경제』, 2018. 교육부, “2021년까지 38개 사립대 폐교 전망...5만6000명 정원 미달 사태.” 8월 14일.

Samuels, Helen Willa. 2007. 『대학기록』. 이은경 역. 서울: 한올아카데미.

#### [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의료법 시행규칙』.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ae, Sung-Jung, Tae-Young Kim, Hye-Won Han, and Yong Kim. 2015, “A Study on the Methods to Improve Records Managem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Focused o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Center of the Foothold National Universit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4): 151-178.

Jang, Yun-Hee. 2005. “A Study on the Collection Polish of University Archives: A Case of Hanshin University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5(1): 23-46.

Jo, Yong-Hun and Eun-Gyoung Seo. 2014. “Acquisition Strategy of Non-administrative University Records” *Proceedings of the 21st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3-47.

Jung, Mi-Bong. 2006.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University Records: Focused on Universities in Gwangju*. M.A.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Jung, Tae-Jin. 2012. *The study on reformation of current state of the record collection and management by the archives of the foothold national university*. M.A. thesis. Hannam University.
- Kim, Song-yi. 2016.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for Dissolved Agencies*. M.A.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Lee, Ju-Hyun. 2018. *A study on job analysis of Private University Archivist: Focus on Job Importance and Achievement*. M.A. thesis. Department of Archival Science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Min, Bo-Hye. 2010. *A Study of how to Manage Records of Closed Schools*. M.A. thesis. Chungnam Nation University.
- Ministry of Education. 2018.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records of abolished institutions*.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05.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records of abolished institutions*. Daejeon: National Archives.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8.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Guidelines*. Daejeon: National Archives.
- Park, Hyo-Sook. 2003. *A Study on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of University: Focused on the Kong Ju National University*. M.A. thesis. Kong Ju National University.
- Park, Su-Ra. 2005. *A Study on Records Management of Private University*. M.A.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Yang, Sang-mee. 2008. *A Study on University Archives'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M.A.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The Education Ministry expects 38 private universities to close by 2021, a shortage of 56,000 people.' 2018. Sports economy newspaper of Korea. August 14.
-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the need for urgent policy decisions across universities.' 2018. Professor news. December 3.
- 'When I went to the army, the university disappeared. Second auction for 7.7 billion won at the University of Asia, a lonely student. Five years of tears.' 2009. Kookmin Daily. November 19.